

교원인사규정

제정	1995.03.01.	9차 개정	2014.08.08
10차 개정	2015.02.01	11차 개정	2017.08.01
12차 개정	2019.08.26	13차 개정	2021.08.09
14차 개정	2022.05.0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개정 2019.08.26.>

②삭제 <2019.08.26.>

③이 규정에서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전임교원과 강사 및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08.26.>

④전임교원은 정년계약제교원과 비정년계약제교원으로 구분한다.(교육전담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를 포함한다.) <신설 2019.08.26.>, <개정 2022.5.2.>

⑤강사는 학생을 교육·지도하는 강의전담강사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학협력을 전담하도록 할 수도 있다. <신설 2019.08.26.>

⑥비전임교원은 겸임교원, 초빙교원, 산학협력중점초빙교수, 객원교수, 특임교수 등을 말한다. <신설 2019.08.26.>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년계약제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2.5.2.>

②비정년계약제교원, 강사, 및 비전임교원에 대한 임용 등 인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8.26.>

제4조(임용절차) ①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우송학원(이하 “본 학원”이라 한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5조(임용기간) ①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교수 : 3년 이하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정년보장 <개정 2017.8.1.>

2. 부교수 : 3년 이하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7.8.1.>

3. 조교수 : 2년 이하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7.8.1.>

4. (삭제)

5. 승진임용자의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4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3.3.>

②교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정하여 계약 임용할 수 있다.

③(삭제) <2017.8.1.>

제6조(교원의 자격)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자격과 경력 등을 갖춘 자로서 연구실적 및 교육에 대한 신념과 인격 등을 참작하여 임용한다.

제7조(겸직금지) ①교원은 본 대학외에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7.8.1.>

1. 법령에 의한 겸직의 경우
2.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이 아닌 직의 위촉을 받은 경우
3. 국가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4.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②총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겸직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7.8.1.>

제7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전임교원은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7.8.1.>

②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7.8.1.>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기간의 적절성
3. 허가 대상기업의 적합성
4. 그 밖에 총장이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원업적평가) ①신규임용 이외의 교원의 임용에는 본 대학 교원업적평가규정이 정하는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중점교원의 업적평가는 별도의 업적평가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실적물

제9조(연구실적물의 인정) ①저서는 전공분야에 관한 것으로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출판사에서 출판된 것이어야 한다.

②논문은 전공분야에 관한 것으로 형식과 내용이 논문의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다음과

같이 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1. 국내외 전문학회에서 발행한 학회지(회보는 제외한다.)
2. 국내외 대학, 대학원, 대학부설연구소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 등에서 발행한 논문집
3.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 간행물(일간지 및 대학신문은 제외한다.)
- ③예능계는 연구, 발표, 전시, 입선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총장이 인정하는 실적 조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공인된 기관의 확인서 및 관계증빙서류(사진·발표관련작품·팜플렛·녹음테이프·악보 등)가 있어야 한다.
- ④학위논문은 발표기간에 제한 없이 1회에 한하여 교원임용을 위한 연구실적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임용 직전의 직급에서 발표된 학위논문에 한하여 인정한다.
- ⑤박사학위논문의 심사를 통과하고 임용일 이전까지 학위취득이 가능하여 “학위취득예정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박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한다.

제10조(연구실적물의 환산) 연구실적물은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인정한다.

1. 1인 단독연구 : 100%
2. 2인 이상의 공동연구 : 주저자 및 교신저자의 실적은 $2 \div (n+2)$ 로, 공동저자의 실적은 $1 \div (n+2)$ 로 환산한다. <개정 2017.8.1.>
3. 석사학위논문 : 100%
4. 박사학위논문 : 200%
5. 예능계 실기(연구·발표·전시·입선 등)에 대한 연구실적물은 교수자격인정심사 세칙 별표 2에 의하되, 평점 1점을 연구실적 100%로 인정한다.

제11조(연구실적물의 심사) ①임용대상자의 연구실적물은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②연구실적물의 심사는 심사대상자의 상위직에 재직중인 전공분야의 3인 이상의 교원(그중 1인 이상은 타 대학 교원)에게 위촉한다.
- ③연구실적물 심사 평점은 각 실적물별로 심사자 전원이 “우” 이상이어야 한다.
- ④석·박사 학위 논문과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A&HCI, SSCI,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심사를 면제한다.

제12조(연구실적물의 양) ①교원의 임용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연구실적물이 임용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 인정되어야 한다.

1. (삭제)
2.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정한 연구 및 창작활동 업적을 충족하면서 최근의 승진소요 기간 이내의 2등급 이상의 논문(작품활동 또는 작품을 포함한다) 실적물이 부교수로 승진시에는 150% 이상, 교수로 승진시에는 2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8.1.>

② (삭제)

제3장 신규임용

- 제13조(신규채용)** ①신임교원을 임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의 방법에 의한다.
- ②외국인이나 특수분야의 전공자 또는 교육·연구 및 관련 산업체의 경력자로서 특별히 초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
- ③교원을 신규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15일전까지 채용분야, 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고, 접수된 응모자 중에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한다.
- ④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 교직원이 아닌자로 한다.

- 제13조의2(자격)** ①교원의 자격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수 : 연구실적 연수 4년 이상과 교육경력 연수 6년 이상
 2. 부교수 : 연구실적 연수 3년 이상과 교육경력 연수 4년 이상
 3. 조교수 : 연구실적 연수 2년 이상과 교육경력 연수 2년 이상
 4. (삭제)
- ②연구실적 연수와 교육경력 연수는 서로 대치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연구실적 연수와 교육경력 연수 환산율 산정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계약임용)** ①신임교원은 임용계약기간(이하 “임용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당사자와의 계약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임용기간은 당사자의 자격과 경력 등을 참작하여 3년 이내의 기간에서 상호 협의로 정한다.

- 제15조(임용기간 등)** ①계약제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임용한다. <개정 2019.08.26.>
1. 근무기간
 - 가. 교수에 대하여는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나. 부교수,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보수 : 본 대학 교원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08.09.>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부)에 관한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기타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6조(임용시기)** 교원의 신규임용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7조(신규임용절차 및 기준) 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8조(재공모 및 보류) 응모자의 수가 전공 분야별로 매우 적거나 적합한 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공모 공고를 하거나 채용을 보류할 수 있다.

제19조(임용후보자 선정) ①총장은 신규임용 심사결과 임용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에 대하여 위원회에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

②임용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가 채용 예정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위원회에 별도의 심사를 위촉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도 있다.

제20조(신규임용 제청) 총장은 신규 임용 대상자에 대해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본 학원 이사장에게 임용을 제청한다.

제21조(신분보장) ①신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본 대학 교원의 신분을 보유한다.

②신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본 학원 정관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신임교원은 임용기간중이라도 임용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해태하거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시점에서 임용계약이 해지된다.

제22조(휴직, 복직, 징계) 신임교원의 임용기간 중의 휴직, 복직,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본 학원 정관 및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23조(직호 및 보수) ①신임교원의 직호는 교육 및 연구와 산업체 근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②신임교원의 보수는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으로 정한다.

제24조(퇴직금) 신임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연금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25조(연구 및 강의담당) ①신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주당 법정 책임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여야 한다.

②신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임용계약서에 명기된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26조(지도교수 배정) 신임교원에게는 임용기간 중 학생 지도교수의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27조(교수업적평가) ①신임교원에게도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적용한다.

②교원업적평가 결과 등을 참작하여 신임교원의 재계약 임용 여부를 정한다.

제4장 승진임용

제28조(임용시기) 교원의 승진임용은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29조(승진소요기간) ①교원의 승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이 규정 개정일 전에 임용된 전임강사의 경우 조교수에서 부교수 : 7년
2. 이 규정 개정일 전에 임용된 조교수의 경우 조교수에서 부교수 : 4년
3. 이 규정 개정일 이후에 임용되는 조교수의 경우 조교수에서 부교수 : 6년
4. 부교수에서 교수 : 5년

②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은 본 대학에 근속한 기간으로 하며,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업적평가 등에 의하여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승진임용 조건) ①승진심사 대상자는 본 대학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정한 승진 기준을 충족한 자로 한한다.

②승진심사에서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정한 교원업적 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인격 및 자세와 대학발전을 위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③직위별 정원 등은 대학의 실정에 따라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부교수에서 교수로의 승진은 정원범위 내에서도 연령과 교원업적 및 대학발전을 위한 기여도 등에서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로 한정할 수 있다.

④장기간 연수중이거나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교원은 해당 기간동안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특별한 경우에는 부대조건을 제시한 조건부 승진을 인정할 수 있다.

⑥승진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의1(특별승진)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대학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특별승진 임용을 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17.8.1.>

제5장 재임용

제31조(임용시기) 교원의 재임용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32조(재임용대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를 재임용 대상자로 한다.

제33조(재임용조건) ①재임용심사에서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정한 교원업적 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교원으로서의 인격 및 자세와 대학발전을 위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②장기간 해외연수 중이거나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교원도 이전의 업적 등을 고려하여 재임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재임용 기준에 미달되거나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교원에게는 부대조건을 제시한 조건부 재임용 또는 재임용 제외로 판정할 수 있다.

④재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정년보장

제34조(정년보장 교원임용) ①본 대학에서 교수 직급으로 임용 된 후 당해 계약기간 동안 교원업적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2회 이상 “A등급” 인 경우 정년보장 교원임용 대상이 될 수 있다.

②정년보장 교원임용 선정심사는 당해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정년보장 교원 임용 대상자는〔별지 제1호 서식〕의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 평정 결과 평균 7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심사위원 중 1명 이상이 70점 미만으로 평가할 경우 평균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5조(정년보장 교원의 의무) ①정년보장 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은 2년마다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연구실적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실적의 환산은 제10조에 의한다.

②정년보장 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은 매년 교원업적 평가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C” 등급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정년보장 교원의 조건부 계약체결 등) ① <삭제 2019.8.1.>

② <삭제 2019.8.1.>

제37조(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①정년보장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 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7인 내외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5.2.1.>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정년보장 교원 임용심사는〔별지 제1호 서식〕의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평정표에 의한다.

제7장 보직 등

제38조(보직) ①보직이라 함은 부총장, 학장, 처장, 단장을 말한다. <개정 2017.8.1., 2021.08.09.>

②부총장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하고, 그 외 보직은 총장이 보한다.

제39조(휴직 및 복직)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본 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직위해제 및 해임) 교원의 직위해제 및 해임에 관하여는 본 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1조(면직)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1. 사망한 때
2.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신규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재계약 되지 못하였을 때
4. 재임용 대상교원이 재임용 되지 못하였을 때

②교원 본인이 면직을 원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제42조(호봉 및 보수) 교원의 호봉 및 보수에 관하여는 본 학원 정관 및 본 대학 교원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08.09.>

제43조(정년) ①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②정년에 달한 자는 정년이 속하는 학기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44조(신분보장) 교원은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기타 관계 법령 및 본 학원 정관에 의거 신분을 보장받는다.

제45조(복무)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46조(포상) 교원의 포상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47조(징계) 교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본 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8조(적용) 교원인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본 학원 정관이나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제34조제1항의 교원업적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은 2011년도 분부터 반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규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0조의1은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평정표

피평정자	소 속 :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				
	직 급 :	성 명 : (인)				
	성 명 :					
구 분 평가영역	평 정 요 목	평정기준				
		A (20)	B (15)	C (10)	D (5)	E (0)
1.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20)	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및 사명감 나. 인간관계의 원만성 다. 건강상태(연령 참작)	(20)	(15)	(10)	(5)	(0)
2. 학생지도 능력과 실적 (20)	가.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자세 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실적 다. 학생취업지도 능력과 자세	(20)	(15)	(10)	(5)	(0)
3. 대학발전 기여도 (20)	가. 보직활동 나. 정책과제참여 및 사업수주 다. 위원회활동 및 학교행사참여	(20)	(15)	(10)	(5)	(0)
4. 근무생활 및 청렴도 (20)	가. 근무자세 나. 타 업무종사 관계 다. 개인생활의 청렴도 라. 규정준수 여부	(20)	(15)	(10)	(5)	(0)
5. 기타 사항 (20)	가. 학내·학과간 인화관계 나. 적극성 및 책임감 다. 구성원간 업무협조 및 신뢰감 라. 업무추진력 및 리더십	(20)	(15)	(10)	(5)	(0)
	소 계	()	()	()	()	()
합 계 (100점)		() 점				

※ 평정방법 : 평정자는 평정요목을 종합하여 평가영역별 평정란 20점~0점 중 택일하여 √